의안번호	2205065
의 뢰 인	최보윤 의원
회 답 일	2024.12.3.
추계번호	24A4638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지 예·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9.6억원(연평균 3.9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	370.4	378.2	386.1	394.2	402.1	1,930.9	386.2
장애인지 예산서 등 발간 비용	4.7	4.8	4.9	5.0	5.1	24.5	4.9
합 계	375.1	383.0	391.0	399.2	407.2	1,955.4	391.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 (예산의 원칙)	○ 정부는 예산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	재량 규정
2	안 제27조의2(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) 안 제68조의4(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	○ 정부는 장애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	의무 규정
3	안 제57조의3(장애인지 결산서의 작성) 안 제73조의4(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	○ 정부는 장애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	의무 규정
	안 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, 안 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)	○ 장애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추가하여야 한다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6조(예산의 원칙) 안 제27조의2 (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) 안 제68조의4 (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	○	추계
	안 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안 제 제71조 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)		
2	안 제57조의3(장애인지 결산서의 작성) 안 제73조의4(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	×	○ 장애인지 결산서 등의 결산서 부속 서류 첨부는 「국가회계법」 (의안번호 2205066에서 작성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은 장애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가 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'성인지 예산제도'[1] 운영에 준하여 추계

○ 장애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인 성인지 예산제도와 동일하게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[2]을 통해 장애인지 예·결산 관련 분석연구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것으로 가정

– 성인지 예·결산의 경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[3]에서 성인지 예·결산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, 성인지 예·결산서 분석연구[4]를 수행함

1) 성인지 예산제도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6조제1항 및 「국가재정법」 제16조제5호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임

2) 「국가재정법」 제8조의2(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기관의 지정 등)에 따라 대통령령 등으로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

3) 성인지예산센터의 주 업무는 성인지 관련 법·제도 연구, 성인지 예·결산서 분석 및 작성, 성인지 예·결산 지침 개발·지원 및 컨설팅 등임

4) 여성가족부 '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' 세부사업(1231-321)의 내역사업

❑ 개정안의 장애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예산안 등 첨부서류로 추가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인쇄비용을 준용하여 추계

○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국가회계제도 운영비 중 국가결산보고서(부속서류 포함 총 136종[5]))의 제작·인쇄비 세부내역을 토대로 부속서류 2종의 인쇄비를 추계

– (1종당 인쇄비용) 국가결산보고서 136종에 대한 2024년 인쇄비 예산은 총 313,155,500원으로 결산보고서 1종당 인쇄비는 2,302,614원임

❑ 개정안의 중앙 및 지방의 인구영향위원회 설치, 인구영향평가 기관지정에 따른 정부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령 등에 위임되어 있어 추계에서 제외

❑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, 2027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전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

❑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인 '성인지 예·결산 운영'의 최근 5년 평균 사업비(3.5억원)가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(2024.11.)[6]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5) 국가결산보고서 인쇄 세부내역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는 총 15종이며 종별 권수를 적용하면 총 136권임(기획재정부,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: 일반회계·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, 2024, p.388.)

6)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(2024.11.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 물가상승률(%)	2.5	2.1	2.0	2.0	2.0	2.0	2.0	2.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표 3] 성인지 예·결산 운영사업 예산내역: 2020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성인지 예·결산 운영	446	447	419	221	240	355

주: 2020~2023년은 집행액, 2024년은 예산액 기준임
자료: 여성가족부, '성인지정책분석 평가운영(1231-321)' 중 내역사업인 '성인지 예·결산 운영'의 최근 5년 예·결산 내역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9.3억원(연평균 3.9억원)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4]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	370.4	378.2	386.1	394.2	402.1	1,930.9	386.2

주: 국회예산정책처 전망(2024.11.)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장애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예산안 등 첨부서류 추가

❑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2종을 첨부서류로 발간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25백만원(연평균 4.9백만원)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○ 추가되는 첨부서류 장애인지 예산서, 기금운용계획서의 인쇄비는 1종당 인쇄비 2,302,614원×2종 = 4,605,228원이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(2024.11.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[표 5] 장애인지 예산서 등 발간 비용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장애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발간 비용	4.7	4.8	4.9	5.0	5.1	24.5	4.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다. 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지 예·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.8억원, 2030년 4.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19.6억원(연평균 3.9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	370.4	378.2	386.1	394.2	402.1	1,930.9	386.2
장애인지 예산서 등 발간 비용	4.7	4.8	4.9	5.0	5.1	24.5	4.9
합 계	375.1	383.0	391.0	399.2	407.2	1,955.4	391.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국회예산정책처	추계세제총괄과
과 장	권아영
추계세제분석관	태정림
연 락 처	02-6788-4652
	jitae@nabo.go.kr